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에 대한 리해

리 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모르고서는 그것을 철저히 지킬수 없으며 위법현상들이 나라나도 제때에 가려볼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관 제10권 119폐지)

현시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과 관련한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는 준법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민사법리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를 정확히 밝혀야 해당 재산취득의 선의여부를 옳게 확정하고 선의취득자의 합법적인 권리와리익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은 해당 재산의 점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알고 그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의 권리취득을 법적으로 인정하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선의취득은 권한없는 점유자로부터 제3자가 점유재산을 허물없이 넘겨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한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것을 의미한다.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은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있다. 물론 선의취득은 해당 재산과 관련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은 해당 재산과 관련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보다도 그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민사거래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보호함으로써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게 한다.

선의취득과 관련한 법적기초는 공화국민법 제62조를 들수 있다. 민법 제62조에서는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민법 제62조와 관련한 해석에서도 공민은 자기 소유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모르고 가진 공민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지만 알면서 가진 악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선의취득은 일련의 조건을 성립기초로 한다.

선의취득의 성립조건은 선의취득자와 권리자의 리익을 다같이 보호하기 위한 방향에서 옳바로 규제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것은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해당 재산과 관련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의 성립조건은 선의취득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민사거래의 안정과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다같이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이 성립되자면 우선 법이 허용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선의취득할수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동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한정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은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의 대상을 동산으로만 한정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들이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서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 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리므로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은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의취득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재산들은 동산이라도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 동산재산들에 한해서는 재산취득자의 선의와 대가지불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자에게 재산반환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법인들이 소유하고있거나 경영관리하고있는 재산들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법인들의 재산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로서 나라의 계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요한 재산들이다. 이로부터 법인들의 재산에 한해서는 그것이 비록 동산에속하는 재산이라도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이나 공민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의 선의여부에는 관계없이 원상그대로 반환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선의취득이 허용되는 재산은 오직 개별적공민들의 재산에만 국한된다.

민사거래가 금지된 재산들도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민사거래가 금지된 재산에는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 군수품, 희유금속, 문화유물 등이 속한다. 이외에 도난물이나 류실물도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도난물이나 류실물은 임자없는 재산으로서 선의취득이 아니라 국고에 납부하여야할 대상으로 된다.

선의취득이 성립되자면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실제적인 점유사실이 있어 야 하며 점유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선의취득은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기초로 한다.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은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로부터 선의취득이 성립되자면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실제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선의취득은 점유형태와 근거에는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실제적인 점유에 기초하여 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자체가 없으면 점유를 기초로 하는 재산의 양도와 그로 인한 선의취득이 이루어질수 없다.

선의취득은 점유자가 점유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양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때점유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점유자의 양도행위는 법에 부합될것을 요구한다. 즉 선의취득은 점유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권리가 없는것을 제외하고 양도행위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만일 점유자의 양도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의취득이 합법적인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점유자의 재산양도와 제3자의 재산취득이 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선의취득에서 점유자는 점유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선의취득은 권한없는 점유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리므로 선의취득은 점유자가 점유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는것을 전제로 한다.

점유자가 점유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점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것으로 표현된다. 실례로 남의 재산을 보관한자나 빌린자가 보관물이나 빌린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리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재산을 자

기 이름으로 처분하는것을 들수 있다.

선의취득이 성립되자면 또한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선의, 무과실로 취득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은 제3자의 재산취득이 선의와 무과실에 기초할것을 요구한다. 만일 제3자의 재산취득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에 기초하고 선의라도 그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의, 무과실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야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다.

제3자의 재산취득은 선의이여야 한다. 재산취득과 관련한 제3자의 선의는 해당 재산을 넘겨주는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제3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알고있는것을 선의와 구별하여 악의라고 한다. 만일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에 기초한것이라면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자의 재산취득은 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제3자는 점유자가 점유재산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허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제3자가 점유자로부 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선의라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선의취득의 법적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취득에서 제3자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재산취득이 선의 가 아니라 악의에 기초한것이고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 대한 허물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은 권리자에게 립증부담을 지우게 된다. 만일 권리자가 제3자의 악의와 허물을 립증하지 못하면 제3자는 선의로 해당 재산을 취득한것으로 되며 그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그에 따르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선의취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즉 선의취득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권리자는 선의취득자를 상대로 재산반환 청구를 제기할수 없다. 선의취득의 효과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취득자가 그 재산을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받은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선의취득자의 권리는 일련의 경우 제한을 받는다. 즉 일련의 경우 권리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직접 재산반환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권리자는 선의취득자에게 해당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에서 재산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이것은 민사관계에서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취득자의 재산적리익을 다같이 합리적으로 보호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권리자는 선의취득자에게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들인 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조건에서 선의취득자를 상대로 자기의 재산반환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선의취득의 대상이 도난물이거나 류실물인 경우 권리자는 재산취득의 선의여부에는 관계없이 재산반환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권리자가 도난물이나 류실물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기할수 있는것은 도난물이나 류실물을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거래를 금지 한 법적인 요구와 관련된다.

권리자는 선의취득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선의나 악의에 관계없이 선의취득자를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그것은 민사관계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선의취득자보호를 통하여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것보다 진정한 권리자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이 더 중요한것과 관련된다.

권리자는 법이 정한 기간내에 재산반환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반환청구를 제기할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는 법이 정한 민사시효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일 권리자가 민사시효기간내에 선의취득자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기간의 경과로 해당 청구권이 상실되게 된다.

선의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자기의 재산을 권한없이 양도한 점유자를 상대로 대금반환과 채무불리행책임을 제기할수 있다.

권리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자기의 재산을 선의취득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선의취득자에게 권리자의 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점유자가 취득할수 없다. 그러므로 점유자는 권리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자의대로 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권리자에게 전액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점유자는 권리자앞으로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점유자가 선의취득자에게 권리자의 재산을 자의대로 양도한것은 일종의 위약행위로서 그로 인한 점유자의 책임은 응당한것으로 된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기의 채무불리행으로 하여 권리자가 입게 된 재산상손실을 완전한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보상의 범위는 권리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를 옳바로 인식하고 민사실천에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선의취득을 통한 민사거래의 안정과 권리자의 리익을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